

상장사·중소기업의 투명한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4/ 7/ 3 통권 1682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국세청, 7월 한 달간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자 접수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사업주는 8월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유류세 한시적 인하 일부 환원 및 2개월 연장
- 내가 키운 기업,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데...세금 이?
- '23년 법인세 신고 법인 103.1만 개, 처음으로 100만 개 넘었다
- 지난해 가업상속 공제받은 기업 188개로 역대 최대
- IFRS 18이 '27년부터 손조롭게 도입 적용될 수 있도록 면밀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7월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이후에도 원활한 거래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외국법인지점이라도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에 보전하면 익금에서 제외됨 (p.9)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과와 稅計·經營 戰略

<주거용주택의 건설, 취득, 임대사용관련 부가세 면제 여부>

개념·구분	국민주택규모	국민주택규모 초과
건축, 건설, 분양	부가세 면제(조특법 제106조)	부가세 과세(일반규정)
건설하청부문	부가세 면제(조특법 제106조)	부가세 과세(일반규정)
건설관련설계	부가세 면제(조특법 제106조)	부가세 과세(일반규정)
신축 후 양도	부가세 면제(조특법 제106조)	부가세 과세(일반규정) (사업자의 양도)
리모델링	부가세 면제(조특법 제106조)	부가세 과세(일반규정)
비사업자거래	부가세 면제(일반규정)	부가세 없음(일반규정)
주거용 임대 (개인, 법인)	부가세 면제 (부가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	부가세 면제(좌동)
토지초과면적	건물정착면적 5배 초과 임대는 과세	좌동
사업용 임대 (비주거용)	부가세 과세 (부가세법 시행령 제41조)	부가세 과세(일반규정)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박윤중공인회계사작성)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건조사정보
02-829-7575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682호 / 주간 27호

2024. 7. 3. (수)

· 발행인: 이윤선
· 제작: (주)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02) 829-7575
· FAX: (02) 718-8565



-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02) 829 - 7575
팩스: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051) 642 - 3988
팩스: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053) 654 - 9761
팩스: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010) 3409 - 2427
팩스: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010) 5255 - 6116

-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주거용 주택의 건설, 취득, 임대 사용관련 부가세 면제 여부	표지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판매촉진비 대상 여부 -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육아휴직 수당 관련 질의 - 상증세법상 일감몰아주기 및 일감떼어주기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3
눈에맞는 절세미인	사업주는 8월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4
매일절세재무요점	- 주식의 취득/보유/처분 등 단계별 세금 - 간이과세자 혜택	6 7
직장인 Survival	감사를 많이 받으면 삶이 풍족해진다	8
최신 판례예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법인법§92①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대해서도 법인법§18(6)가 적용되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을 해당 국내지점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은 익금에서 제외되는 것임 (사전법규법인-661, 2023.10.12) - 국내펀드의 분배금이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설립된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내국법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서면국제세원-3116, 2023.12.21)	9 10
세정 뉴스와 해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3년 연장... R&D 인력 세액공제 확대	11
마케팅 Tax consulting	외국법인지점이라도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에 보전하면 익금에서 제외됨	9
세무정보	- 유류세 한시적 인하 일부 환원 및 2개월 연장 - 내가 키운 기업,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데...세금이? - '23년 법인세 신고 법인 103.1만 개, 처음으로 100만 개 넘었다 - 지난해 가업상속 공제받은 기업 188개로 역대 최대	12 16 27 32
회계정보	- IFRS 18이 '27년부터 순조롭게 도입·적용될 수 있도록 면밀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7
경영정보	- 7월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이후에도 원활한 거래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42
세무환율정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8

판매촉진비 대상 여부

- Q** 1. 당사의 전자기기 상품을 거래처에 공급하고 거래처는 소비자에게 정가로 판매합니다.
(구입후 등록절차를 통해 각종할인 프로그램 보상받을 수 있다고 안내함)
2. 각종 할인 프로그램 보상을 받기위해 소비자는 구입후 수일내에 당사 홈페이지 또는 유선으로 기기등록과 소비자에게 해당되는 할인프로그램을 등록합니다.
3. 당사는 등록여부 확인절차후 소비자 은행계좌에 해당 할인금액을 입금합니다.
위와 같은 영업활동을 할 때
- Q** 적격증빙없이 소비자 등록정보만와 입금증으로 판매촉진비(판매관리비)로 회계처리 하면 되는지요?

A 소비자 상품 구매후 홈페이지 등에 기기등록하면서 할인프로그램을 통한 보상비는 귀사의 의견대로 판매촉진비로(판매관리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육아휴직 수당 관련 질의

- Q**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육아휴직 수당 관련 질의
1. 소득세법 개정 내용 (2024.1.1.부)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 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을 포함한다)
2. 질의 사항
- 가. 현황
- 단체협약 사항에 근거하여
- 1) 본원은 월 50만원의 육아휴직수당 지급 : 육아휴직 기간 지급 (현재 과세)

- 2) 사학연금 본인부담금 대납 : 육아휴직 기간에 대납
- 3)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대납 : 육아휴직 복직 후 대납

나. 질의사항

- 1) 개정 내용 중 “정관 또는 규칙”에 정관이 아닌 사내 보수규정 또는 단체협약사항도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 2) 육아휴직수당이 비과세 적용이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의 금액 범주는 어디까지인지, 현재 본원이 육아휴직기간에 지급하고 있는 월50만원 금액 전액 비과세 처리해도 되는지의 유무
- 3) 육아휴직수당 지급 외 사학연금 건강보험료 대납분의 비과세 적용여부

A

- 1.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서 사무직원의 보수 등을 학교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도 대해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한것이 이번 개정의 취지입니다. 따라서 사내보수 규정 등도 규칙 등에 포함된다고 판단되나 이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과세당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은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인데,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해당 금액의 구체적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3. 건강보험료 대납분은 비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상증세법상 일감몰아주기 및 일감떼어주기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Q

상증세 관련 예규(상속증여-382, 2013.7.22)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는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대인 경우 즉, 개인사업자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수혜를 받는 경우, 수혜자가 법인이 아니므로 상증세법상 일감 몰아주기 및 떼어주기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이해해도 될런지요?

A

일감몰아주기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귀사의 의견대로 개인사업자와의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면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사업주는 8월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상담실 백종훈 차장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이 되는 매년 7월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연매출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주이다(지방세법§75②).

임대사업자 등으로부터 건축물을 임대하여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동 건축물이 임대인의 사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사업을 행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는 임차인이 된다. 단, 임차인(1차 납세의무자)이 내지 않은 세금에 대해 임대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어 부담해야 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사업소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소세 과세대장에 등재가 누락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불이행 등으로 포탈된 과징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수 있다.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기준일

주민세 사업소분은 매년 7월 1일 현재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사업주가 1년분의 주민세 사업소분을 모두 부담하는바, 7월 2일 이후에 새로이 사업소를 설치한 경우라면 7월 1일이 이미 지났으므로 당해 연도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는 없다.

또한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소를 폐지한 경우에도 7월 1일에는 사업장이 없으므로 2024년의 주민세 사업소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사업소를 폐지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매년 7월 1일 현재에 1년 이상 휴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가 없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과세대상 및 면세점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사업소인데, 사업소의 연면적이 주민세 사업소분의 과세대상이다.

사업소연면적이란 사업소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의미하는데, 건축법 제2조제1항제2

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의 건축물의 연면적이다.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합숙사·사택·구내식당·의료실·도서실·박물관·과학관·미술관·대피시설·체육관·도서관·연수관·오락실·휴게실·병기고·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구내 목욕실 및 탈의실·구내이발소·탄약고 등은 주민세 재산분의 과세대상 건축물에서 제외된다.

건축물이 없고 기계장치 등의 시설물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연면적으로 계산하며, 2 이상의 사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사용면적 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용면적의 비율로 안분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과세대상이 된다.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에는 주민세 사업소분 중 연면적에 의한 세액은 면세되는데, 사업소 전체면적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면적을 차감한 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세율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세율(5만원~20만원)에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더하여 계산하게 되는데, 세율은 다음과 같다

① 기본세율

개인	직전연도 매출액 8,000만원 이상	5만원
법인	자본금 30억 이하	5만원
	자본금 30억초과~50억이하	10만원
	자본금 50억 초과	20만원

② 연면적에 의한 세율 :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주민세 사업소분의 신고납부 및 가산세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자진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20%가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되며, 납부불성실가산세(세액×지연일수×0.022%)도 가산된다.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월

주식의 취득/보유/처분 등 단계별 세금

구분	무상이전(취득)	보유(배당)	유상이전(양도)
세목	증여세 상속세	배당소득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국외전출세

화

간이과세자 기준 7월부터 상향

	종전	개정
간이과세 기준금액	연 매출액 4,800만원	연 매출액 8,000만원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업 4,800만원)
납부면제 기준	연 매출액 3,000만원	연 매출액 4,800만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발급의무 없음	발급의무 있음 (연 매출액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공제 ×	공제 ○ (연 매출액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

* 국세청



간이과세자 혜택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대상사업자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p>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1억4백만원 미만*</p> <p>- 8,000만원 → 1억4백만원('24.7월부터)</p> <p>* (부동산임대업,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과세 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p>
	<p>※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일부 업종 간이과세 적용 배제 (광업, 제조, 도매, 부동산매매업,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 임대업 등)</p>	
과세기간	1기, 2기 예정, 확정 (1.1 ~ 3.31., 4.1~6.30., 7.1~9.30., 10.1-12.31.)	1.1-12.31.
과세표준	공급가액(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공급대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매출세액	공급가액×10%	공급대가×부가가치율*×10% * ('21.7.1. 이후) 업종별 15-40%
매입세액	공급가액×10% * '21.7.1. 이후 수취분(매입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포함)	공급대가×0.5%
납부(환급)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의무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영수증 발급 공급대가 4,800만원-1억4백만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납부의무 면제	해당없음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장·단점	(장점) 세금계산서 발급, 매입세액 전액 공제, 환급가능, 의제매입세액공제	(장점) 납부면제, 낮은 세금부담, 신고절차 간편(1년에 1번 신고·납부) (단점)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4,800만원 미만), 환급 불가, 매입세액 공제(공급대가×0.5%), 의제매입세액 공제 불가



감사를 많이 해주면 삶이 풍족해진다

돈이든 물건이든 서비스든, 안전이든 애정이든 사람은 '줄어들면' 불안해하고 '늘어나면' 기뻐한다. 그래서 누구든 '줄게'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느낌을 갖는 것 같다. 마음이 가득 채워지면 그 풍족함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어진다. 그렇게 해서 풍족함은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옮겨간다.

많은 사람들을 미소짓게 만드는 사람이 풍족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바로 마음부자이며, 비록 돈이 없어도 많은 애정과 배려에 둘러싸여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6월 21일 (금)	6월 24일 (월)	6월 25일 (화)	6월 26일 (수)	6월 27일 (목)
미	달	러	(USD)	1383.80	1389.10	1389.70	1386.40	1390.10
일	본	엔	(JPY)	870.89	869.63	870.38	868.26	865.00
영	국	파운	(GBP)	1751.61	1756.45	1762.35	1758.58	1754.31
캐	나	다	(CAD)	1011.00	1014.50	1017.50	1014.93	1014.15
홍	콩	달	(HKD)	177.28	177.96	178.00	177.52	178.03
중	국	원	(CNH)	190.01	190.65	190.71	190.39	190.61
유	로	화	(EUR)	1481.15	1485.64	1491.43	1484.97	1484.35
호	주	달	(AUD)	921.33	922.50	924.36	921.26	923.51
싱	가	폴	(SGD)	1021.59	1025.17	1027.12	1023.32	1022.81
말	레	이	(MYR)	293.77	294.74	294.96	294.70	294.98

최신 판례 예규

Marketing Tax consulting

외국법인지점이라도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에 보전하면 익금에서 제외됨

법인법§92①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대해서도 법인법§18(6)가 적용되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을 해당 국내지점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총당함 금액은 익금에서 제외되는 것임

사전법규법인-661, 2023.10.12

질 의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대해서도 법인법§18(6)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 신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를 면제받음으로써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손금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 총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총당하는 경우, 해당 채무면제이익은 같은 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8조 제6호를 준용함으로써 해당 국내지점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이후 전환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전환사채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

서면법규재산-3285, 2023.10.23

질 의

- 신청인은 상장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직접 취득(펀드를 통한 간접 취득이 아님)하여 주식으로 전환한 이후 전환된 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함
- 전환사채의 표면이자율과 만기보장수익률은 0%이며, 전환가격은 10,000원, 전환청구일 현재 주가는 20,000원, 매각가격은 25,000원임

질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이후 전환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주식의 취득가액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89, 2023.10.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89, 2023.10.20.

[질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이후 전환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

(제1안) 전환 당시 전환가격

(제2안) 전환사채 취득가액

(제3안) 전환 당시 주식의 시가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근속연수가 다른 퇴직금의 퇴직소득세 계산은 세액정산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것임

서면법규소득-4646, 2023.12.18

질 의

- 질의인은 '17.2월 중 퇴직금 중간정산 후 '21.12월에 희망퇴직한 자로서, 퇴직시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일시금을 지급받게 되었음

질의

- 퇴직금 중간정산 등 사유로 퇴직소득별 근속연수가 서로 다른 경우의 퇴직소득세액 계산방법

회 신

- 귀하께서 우리청에 신청한 서면질의 경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00, 2023.12.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00, 2023.12.15.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 시 퇴직일시금과 명예퇴직수당을 함께 지급받은 경우로서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148조의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내펀드의 분배금이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설립된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내국법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서면국제세원-3116, 2023.12.21

질 의

- 질의법인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국내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이하 "국내펀드")가 발행하는 집합

투자증권을 싱가포르 법률에 따라 싱가포르에서 Variable Capital Company의 형태로 설립된 투자기구(이하 "국외투자기구")에 판매함

- '국외투자기구'는 국내에서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산운영사가 국내·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자금을 모집하여 국내펀드를 포함한 국내 외의 다양한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처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운영하고, 그 결과로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투자행위를 하는 목적으로 싱가포르에 설립됨
- 국내펀드는 질의법인을 통하여 국외투자기구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함으로써 모집한 투자금을 운용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수익을 질의법인을 통하여 국외투자기구에 배분하며, 국외투자기구는 다시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킴
- 질의법인은 국내펀드의 판매사로 국외투자기구에 배분되는 국내펀드의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함

질의

- 국내펀드의 분배금이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설립된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내국법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
 - 국내원천소득을 일차적으로 지급받는 국외투자기구와 해당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내국법인 중 누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는지

회 신

국내펀드의 분배금이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설립된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내국법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동 내국법인을 소득자로서 보아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3년 연장... R&D 인력 세액공제 확대

정부가 올해 종료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한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핵발전 등의 시설 투자와 관련 대·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연구개발 투자는 대·중견 30~40%, 중소기업 40~50%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올해 말까지 국가전략기술에 첨단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관련 기술을 추가하도록 한다. 시행령 개정 사항이기에 국회 의결 없이 정부가 결정할 수 있다.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료·이용료, 직무발명보상금, 기술정보비 등을 추가한다. 이 역시 시행령 개정 사항이다.

R&D 인건비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현재는 국가전략기술과 일반 R&D를 동시에 수행하는 인력은 일반 R&D 공제율만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국가전략기술을 연구하는 시간만큼 국가전략기술 R&D 공제율을 적용한다.

R&D용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상각기간을 짧게 잡으면 그만큼 법인세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국세청, 7월 한 달간 '기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 접수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7월 한 달 동안 '기업승계 세무컨설팅' 제3기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하거나 ▲기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이다.

농·임·축산·어업, 법무·회계서비스업, 이·미용업, 목욕업, 세탁업, 음식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선정 결과는 9월 2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올해부터는 이전에 신청하고 선정에서 떨어진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도 심사 대상에 포함해 한 번 더 컨설팅 기회를 제공한다.

선정 우대 요건은 2022년 또는 2023년 수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이거나, 수출 중소기업 중 관세청·코트라가 선정한 세정지원대상 업체다.

지난해 기업 매출 역대최대 7300조... 법인세는 6.2조원 감소

지난해 기업 매출이 전년대비 1241.6조원이나 증가한 7321.8조원을 기록했지만, 법인세는 6.2조원 감소했다.

국세청이 24일 공개한 2023년분 법인세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81.6조원으로 전년대비(87.8조원) 6.2조원 감소했다.

지난해 법인세 신고 기업 수는 전년도보다 4만8504개 증가한 103만960개였다.

흑자기업은 전년대비 3만6728개 증가한 65만2200개로 적자기업 수 증가보다 훨씬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기업 전체 매출은 전년대비 1241.6조원이나 증가한 7321.8조원이었지만, 매출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중 과세대상으로 잡는 과세표준은 전년도보다 줄었다.

지난해 과세표준은 459.1조원으로 전년대비 16.0조원 줄었다.

매출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순이익이 줄었다는 것은 영업이익률 자체가 내려간 영향이 크다.

상장사 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45%, 코스닥 상장사는 같은 기간 -35.4% 감소했다.

특히 법인세를 많이 내던 대형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크게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세수 현황에 먹구름을 끼게 했다.

코스피 상장사의 지난해 총매출은 1903.5조원으로 전년대비(1648.6조원) 254.9조원 증가했으나, 법인세는 25.5조원으로 전년대비(30.3조원) 4.8조원 감소했다.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지난해 총매출은 199.5조원으로 전년대비(172.9조원) 26.6조원 증가했어, 법인세는 3.4조원으로 전년대비(3.2조원) 0.2조원 감소했다.

비상장사의 지난해 총매출은 5218.8조원으로 전년대비(4258.6조원) 960.2조원 증가했으나, 법인세는 52.7조원으로 전년대비(54.3조원) 1.6조원 감소했다.

비상장사에는 중소·중견기업들도 포함되지만, 재벌 산하에도 대형 비상장사가 다수 있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 일부 환원 및 2개월 연장

- 국세청, 2024. 6

[유류세 한시적 인하 일부 환원 및 2개월 연장]

정부는 '24.6.30.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5%, 경유 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조치를 '24.8.31.까지 2개월 연장하되,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5%에서 △2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37%에서 △30%로 조정한다.

이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 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으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휘발유 △164원/리터(ℓ), 경유 △174원/리터(ℓ), 액화석유 가스(LPG)부탄 △61원/리터(ℓ)의 세부담이 경감된다.

<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율 >

(단위 : 원/ℓ)

유종	인하 전 탄력세율	'21.11.12. ~ '22.4.30.	'22.5.1. ~ 6.30.	'22.7.1. ~ 12.31.	'23.1.1. ~ '24.6.30.	'24.7.1. ~ 8.31.
		△20%	△30%	△37%	휘발유△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37%	휘발유△20%, 경유·액화석유가스(LPG) △30%
휘발유	820	656(△164)	573(△247)	516(△304)	615(△205)	656(△164)
경유	581	465(△116)	407(△174)	369(△212)	369(△212)	407(△174)
액화석유 가스 (LPG)부탄	203	163(△40)	142(△61)	130(△73)	130(△73)	142(△61)

* ()는 인하 전 세율 대비 인하폭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6개월 연장]

정부는 발전원가 부담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 등을 감안하여 '24.6.30.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를

'24.12.31.까지 6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 발전연료 개별소비세율 인하 현황 >

(단위: 원/kg)

구 분		당초		현행 (탄력)	구 분		당초		현행 (탄력)	
		기본	탄력				기본	탄력		
L N G	발전용 LNG (일반)	12	12	10.2	유 연 탄	고열량탄 (5,500kcal~)	46	49	41.6	
	발전용 LNG (열병합)	12	8.4	8.4		중열량탄 (5,000~5,500kcal)		46	46	39.1
	非발전용 LNG	60	42	42		저열량탄 (~5,000kcal)		43	43	36.5

* 붉은색 표시 부분이 인하조치 연장대상 탄력세율

[매점매석 고시 등 후속조치]

휘발유,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6.17., 09:00)하였다. (☞참고1)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6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이 제한(휘발유·경유는 전년동기 대비 115%,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전년동기대비 120%)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시정명령(제9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제26조) 등

향후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율 '24.9.30.까지 받을 계획이다. (☞참고2)

[시행령 개정 등 후속절차]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6.19.~20.), 관계 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6.25. 예정) 등을 거쳐 ' 24.7.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참고 1 -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개별소비세법령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령의 개정으로 석유제품에 대한 세율이 인상되는 점을 이용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매점매석을 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물품) 이 고시를 적용할 물품은 다음과 같다.

1.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 바목에 규정된 과세물품
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과세물품

제3조(적용대상자) 이 고시를 적용 받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에 규정한 석유정제업자(이하 "석유정제업자"라 한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8호에 규정한 석유수출입업자(이하 "석유수출입업자"라 한다)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에 규정한 석유판매업자(이하 "석유판매업자"라 한다)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3호에 규정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이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라 한다)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5호에 규정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이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라 한다)

제4조(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매점매석 등 금지) ① 석유정제업자는 2024년 6월중 반출하는 제2조제1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기간 반출량이 2023년 같은 기간 반출한 물량의 120%를, 2024년 6월중 반출하는 제2조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유종별로 해당 기간 반출량이 2023년 같은 기간 반출한 물량의 11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석유수출입업자는 2024년 6월중 수입하는 제2조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유종별로 해당 기간 수입물량이 2023년 같은 기간 석유수출입업자가 판매한 물량의 11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는 2024년 6월중 수입신고하는 제2조제1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기간 수입신고 물량이 2023년 같은 기간 수입신고한 물량의 12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2024년 1월 1일 이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7조에 의한 석유정제업자간, 같은 법 제9조제4항에 의한 석유수출입업자간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7조제4항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간 지위승계가 있었을 경우, 고시 제4조제1항의 "2023년 같은

기간 반출한 물량", 같은 조 제2항의 "2023년 같은 기간 석유수출입업자가 판매한 물량" 및 같은 조 제3항의 "2023년 같은 기간 수입신고한 물량"은 지위승계 이전 각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2023년 6월에 반출·판매 또는 수입한 물량의 합으로 한다.

⑤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석유판매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게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업체에게 과도하게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수출물량 급증, 생산설비 신·증설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반출물량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석유판매업자 등의 매점매석 등 금지) ① 석유판매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2024년 6월 중 제2조 각 호의 물품을 폭리를 목적으로 과도하게 구입하거나 보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석유판매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제1항의 기간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신고센터 설치) 이 고시의 원활한 집행과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각 시·도는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반출·수입물량 보고)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자에 대해 2023년 6월 및 2024년 6월 중 반출 또는 수입된 물량에 관한 자료제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26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이 고시의 시행상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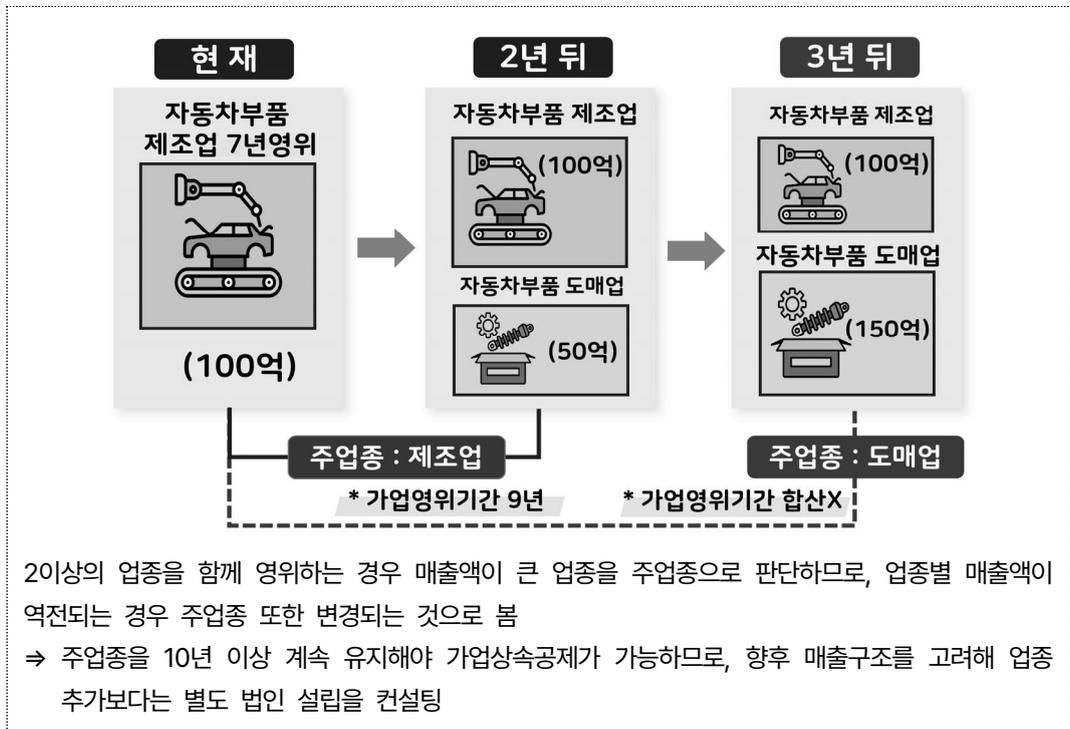
제2조(적용시한) 이 고시는 시행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적용한다.

내가 키운 기업,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데...세금이?

- 국세청, 2024. 5

- (제도개요)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우수 중소기업이 세제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법 지식과 장기간에 걸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별 상황에 맞는 요건을 국세청에서 사전에 진단하고, 미비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상시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 2022년 1기 컨설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339개 업체를 컨설팅하였고, 오는 9월부터 1년간 운영될 제3기 컨설팅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주요 사례 >



□ (신청 방법) ①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하였거나, ②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은 '24.7.1.부터 '24.7.31.까지 방문, 우편,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선정 결과는 '24.9.2.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 * 제외업종 : 농·임·축산·어업, 법무·회계서비스업, 이·미용업, 목욕업, 세탁업, 예식장 등
- 한편, 올해부터는 이전에 신청하였으나 선정이 안 된 기업은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심사 대상에 포함하여 한 번 더 컨설팅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선정 우대) 안정적인 고용환경과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출 및 장수 중소기업을 우대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 '23년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대상자 선정 현황 >

구분	심사대상	최종선정				
		합 계	1순위 (수출기업)	2순위(장수기업)		3순위 이하
				40년 이상	30년 이상	
건수(건) (점유비, %)	407	189	80 (42.3)	28 (14.8)	54 (28.6)	27 (14.3)

- * 최종 선정된 189개 기업 중 수출·장수기업이 162개로 85.7% 차지
- 먼저, '22년 또는 '23년 수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이거나, 수출 중소기업 중 관세청·코트라가 선정한 세정지원대상 업체를 최우선 선정하고,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증받은 명문장수기업*과 사업영위기간이 30년 이상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오랫동안 기여한 장수기업 등을 기준에 따라 컨설팅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 * 해당 업종에서 45년 이상 건실하게 운영한 기업으로서 일자리 창출, 수출 증대와 같은 경제적 기여 등을 평가하여 선정된 기업(현재 43개)

|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우선 선정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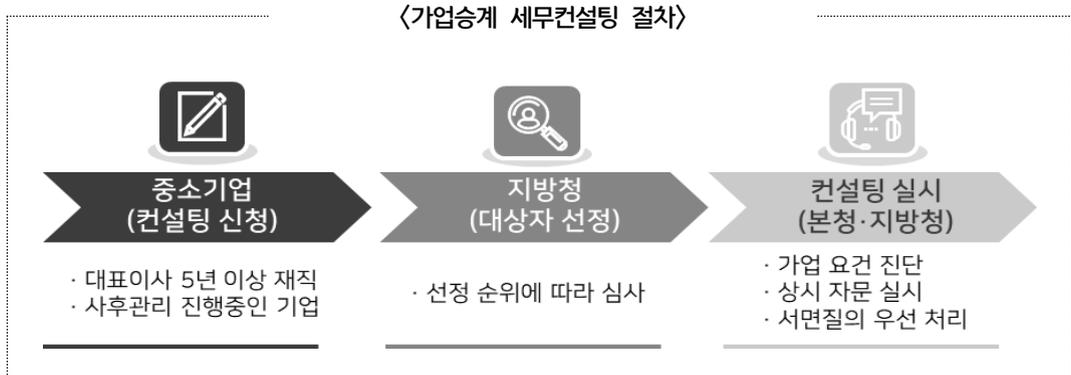
- (1순위) 국세청 세정지원 대상인 수출 중소기업
- (2순위)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명문장수기업 및 사업기간 30년 이상 장수기업
- (3순위) 가업상속 및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이 큰 기업
- (4순위) 조사모범 및 납세자의 날 수상한 모범납세기업(최근 5년 이내)
- (5순위) 직전 사업연도 고용인원이 많은 기업

□ (향후 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가업승계를 고민 중인 중소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하고,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기업이 세금문제 걱정 없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참고 1.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주요 내용 및 신청방법

□ 컨설팅 진행절차



□ 컨설팅 주요내용

- 가업승계 사전·사후요건 진단**
 지방청 대면상담, 기업 현장방문 등을 통해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사전 준비사항 및 사후 준수요건 등을 진단하고 보완사항을 안내
- 상시 자문서비스 제공**
 가업상속 공제가능여부, 사후관리 위반 추정사유 등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요청에 대하여 4주 이내 검토 후 의견 회신
- 신속한 서면질의 답변**
 가업승계 관련 법령해석이 필요한 경우 최우선 처리로 불확실성 조기 해소

□ 신청대상 및 방법

- (신청대상) ①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 중인 중소기업
 ② 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
- (신청기간) '24.7.1. ~ 7.31. (※ 대상자 선정 결과통지는 '24.9.2.까지 개별통지)
- (신청방법) 홈택스* 또는 기업 대표자 주소지 관할 지방국세청에 우편, 방문접수
 - 단, '22 - '23년 컨설팅 미선정 기업은 신규 신청 없이도 심사대상에 자동 포함
 * 홈택스(www.hometax.go.kr) : 세금관련 신청/신고 > 공통분야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입력 후 조회하기 > 인터넷 신청

참고 2. 기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 안내문(홍보용)

① 기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방법

● 신청대상

-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 중인 중소기업의 대표
- 기업승계이후 사후관리 진행 중인 중소기업의 대표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4. 7. 1.(월) ~ 2024. 7. 31.(수)
- 신청방법
 - 홈택스* 또는 기업 대표자 주소지 관할 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 '기업승계 세무컨설팅' 조회

● 제출서류

- 기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서

● 컨설팅 대상 선정

- 신청대상자 중 국세청 세정지원 대상인 수출 중소기업, 사업영위기간이 30년 이상인 장수기업 등에 대해 우선 선정순위를 부여하며, 서면심사 후 선정결과를 2024. 9. 2.(월)까지 알려드립니다.

② 기업승계에 세무컨설팅의 주요 내용은?

● 기업승계란?

- 기업승계 지원제도는 기업상속공제와,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있습니다.
 - ① 기업상속공제 :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경영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 까지 상속공제해 주는 제도
 - ②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경영자인 부모가 자녀에게 기업을 살아 생전에 증여하는 경우 10%(2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

● 컨설팅 기간

- 대상 선정일로부터 1년간 기업승계 관련 세무컨설팅을 지원합니다.



●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지원 내용**

- 컨설팅은 기업현장을 방문하거나 지방청 대면상담 혹은 전화상담 등 기업들의 선택에 따라 받기 편리한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 (요건 진단)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 개별기업이 사전에 준비해야 할 내용과 사후에 지켜야 할 내용을 진단하고 보완사항을 안내합니다.
 - (상시자문) 가업승계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어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4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합니다.
 - (신속한 서면답변) 가업승계와 관련하여 법령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서면질의를 제출하면 최우선으로 처리합니다.

참고 3.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청 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일반신청/결과조회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입력 후 조회하기 > 인터넷 신청

참고 4. 2024년 가업 관련 주요 세법개정 내용

-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사후관리 요건 완화 등 세법이 개정되었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가업상속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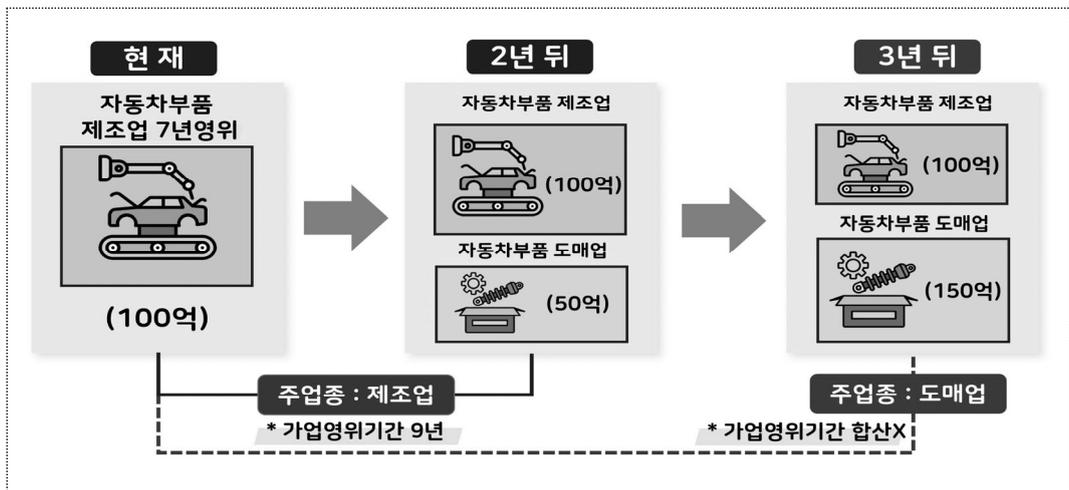
구분	기 존	개 선
사후관리 요건 완화	상속인 가업종사 사후관리 요건 -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중분류 → 대분류
상속인 요건 완화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은 적용 배제
상속인 가업종사 사후관리 요건 완화	·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종사 · 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내 업종변경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은 적용 배제

②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구분	기 존	개 선
저율과세 구간 조정	(세율) 10% - 단, 60억 초과분은 20%	(세율) 10% 단, 120억원 초과분은 20% (60억원→120억원)
연부연납 기간 확대	5년	15년
사후관리 요건 완화	수증자 기업종사 사후관리 요건 -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업종 변경 허용	중분류 → 대분류

참고 5. 기업승계 세무컨설팅 대표 사례

■ [사례1] 주업종이 제조업인 법인이 도매업 매출 증가로 주업종이 변경된 경우, 기업
영위기간은 주업종이 변경된 날로부터 새롭게 기산하므로, 기존 제조업을 영위한 기
간은 기업영위기간에 합산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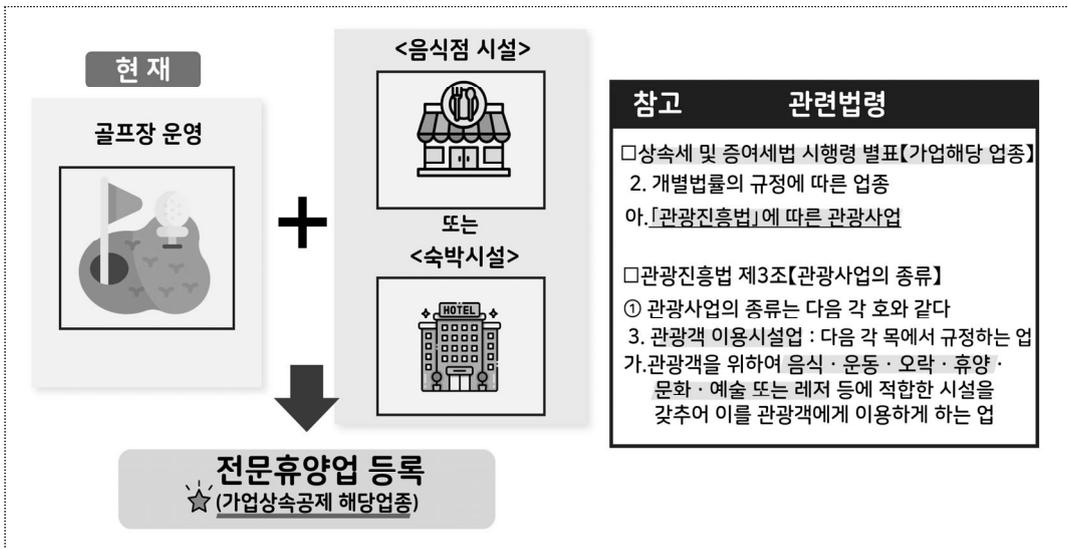
□ 질의내용

-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7년째 영위하던 A법인은 규모 확장을 위해 부품 도매업을 추가할 계획에 있음
 - 해당 부품은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거래처 확보도 용이하여 부품도매업 추가시 3년내 도매업 매출이 제조업 매출액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됨

□ 컨설팅내용

- 2이상의 업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판단하므로, 업종별 매출액이 역전되는 경우 주업종 또한 변경되는 것으로 봄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대분류(제조업) 내에서 업종이 변경(부품 제조업 → 기계 제조업) 되는 경우는 종전 업종의 가업영위기간을 합산하지만,
 - 대분류를 벗어난 업종변경(제조업 → 도매업)의 경우 종전 업종의 가업영위기간은 합산되지 아니하며 주업종 변경일로부터 새롭게 기산함
- 가업상속공제는 주업종을 10년 이상 계속 유지해야만 가능하므로, 향후 매출구조를 고려해 도매업종 추가보다는 별도 법인을 설립할 것을 컨설팅

■ [사례2]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 또는 음식점 시설 등을 함께 갖추고 전문휴양시설로 등록된 골프장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으로 분류되며, 이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에 해당



□ 질의내용

- 골프장 법인을 10년째 운영중인 사업자 B는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할 계획이 있으나, 막대한 조세부담이 우려되어 고민중임
 - 골프장운영업은 한국표준분류표상 스포츠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이는 가업해당 업종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세제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임

□ 컨설팅내용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은 가업해당 업종으로 열거되어 있으며, 관광사업에는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운동·휴양 또는 레저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관광객 이용 시설업'이 포함됨
- '관광객 이용 시설업' 종류에는 숙박 또는 음식점과 골프장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전문휴양업'이 대표적 업종임
- 따라서, 숙박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춘 후 관할 지자체에 전문휴양업으로 등록 신청하고 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운영하도록 컨설팅

참고 6. 예상 질의 및 답변

1. 현행 가업승계 세제혜택에는 어떠한 제도가 있는지?

■ 가업상속공제란?

-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경영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 어떤 혜택이 있나요?

가업영위기간	공제한도
10년 이상 20년 미만	300억
20년 이상 30년 미만	400억
30년 이상	600억

-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 가능합니다.
 - 피상속인(사망자) 요건
 - ① 최소 10년 이상 기업을 경영하며 대표이사로 재직
 - ② 기업의 지분을 40%(상장사 20%) 이상 보유
 - * 개인기업, 법인기업 가능
 - 상속인 요건
 - ①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가업종사
 - ②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
 - ③ 신고기한부터 2년이내 대표 취임



● 다만 승계 이후 5년간은 아래의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 요건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공제받았던 상속세에 이자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① 가업용 자산을 40% 이상 처분하면 안됩니다.
- ②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며 가업을 경영해야 합니다.
- ③ 상속받은 가업 주식의 지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 ④ 5년간 정규직 근로자수 평균과 총급여액이 기준고용인원(기준총급여액)*의 90%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 상속개시일 직전2개 사업연도의 평균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란?

● 경영자인 부모가 자녀에게 가업영위 법인의 주식을 낮은 세율로 증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 어떠한 혜택이 있나요?

- 일반증여와 비교하여 공제액이 크고, 세율이 낮습니다.

구 분	증여공제	세 율
일반적인 증여	5천만원	10~50%
증여세 과세특례	10억원	10~20%

- 특례적용시 증여세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증여세 과세특례 세율
[과세가액-10억]≤120억	10%
[과세가액-10억]>120 (과세가액 한도 : 600억)	120억 초과 20% 120억 이하 10%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특례적용 가능합니다.

- 증여자(부모) 요건
 - ① 최소 10년 이상 기업을 경영
 - ② 기업의 지분을 40%(상장사 20%) 이상 보유
- * 개인기업은 적용 불가능합니다.

- 수증자 요건
 - ① 18세 이상 자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
 - ②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대표 취임

● 다만 승계 이후 5년간은 아래의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 요건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증여세율을 적용한 증여세에 이자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①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 ②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며 가업을 경영해야 합니다.

2. 세제혜택을 적용받는 경우 얼마 정도의 절세효과가 있는지?

○ 30년 이상 경영하고 가업재산이 700억 원인 경우 각 제도별 절세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업상속공제 활용 시 세액비교 (가업영위 기간 30년 이상으로 가정)

	일반적상속	VS	가업상속공제적용시
상속재산가액	700억원		700억원
가업상속공제액	-		600억원
일괄공제	5억원		5억원
상속세 과세표준	695억원		95억원
세율	50%		50%
산출세액	342.9억원		42.9억원
신고세액공제	10.3억원		1.3억원
자진납부세액	332.6억원	291억원 절세	41.6억원

증여세 과세특례 활용 시 세액비교 (가업영위 기간 30년 이상으로 가정)

	일반적증여	VS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증여세 과세가액	700억원		700억원
증여공제	0.5억원		10억원
증여세 과세표준	699.5억원		690억원
세율	50%		10% (120억원 초과분 20%)
산출세액	345.2억원		126억원
신고세액공제	10.4억원		-
자진납부세액	334.8억원	208.8억원 절세	126억원



3. 금년에도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대상자가 확대되는지?

- 올해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며, 대상자 확대보다는 내부역량 제고를 통해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 관리시스템 구축 등 컨설팅 품질관리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 ('22년) 150개 → ('23년) 189개 → ('24년) 190개

4. 가업승계 지원팀에게 모든 세무 문제를 공개해야 하는지?

- 가업승계 요건의 적정성 및 쟁점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만 공개하면 됩니다.
 - 컨설팅은 세무검증이 아닌 가업 적용요건을 갖추기 위해 현재 준비해야 하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이 주된 목적으로 컨설팅 과정에서 취득한 세무상 정보는 과세정보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5. 세무컨설팅을 여러번 받을 수 있는지?

- 많은 유망 중소기업이 세제혜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서비스를 기업별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다만, 사후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전년도 컨설팅 대상기업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상시 자문'과 '서면질의 최우선 처리'가 1년 더 제공됩니다.

6.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에 제한요건이 있는지?

- 가업상속공제 등 가업승계 세제혜택에는 업종제한이 있으며, 이에 따라 세무컨설팅 또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업종별 신청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별표]

<가업 해당 업종>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 출판업, 연구개발업, 방송업, 광고업, 전기통신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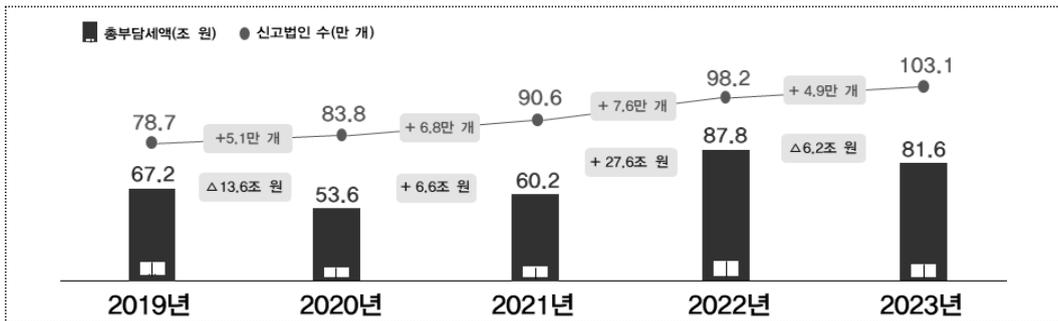
<가업 제외 업종> 농·임·축산·어업, 주점업, 주차장 운영업, 부동산업, 택배, 금융·보험업, 법무·회계 서비스업, 아·미용업, 입시학원, 스키장, 노래방, 게임장, 무도장, 욕탕, 세탁, 음식점 등

'23년 법인세 신고 법인 103.1만 개, 처음으로 100만 개 넘었다

- 국세청, 2024.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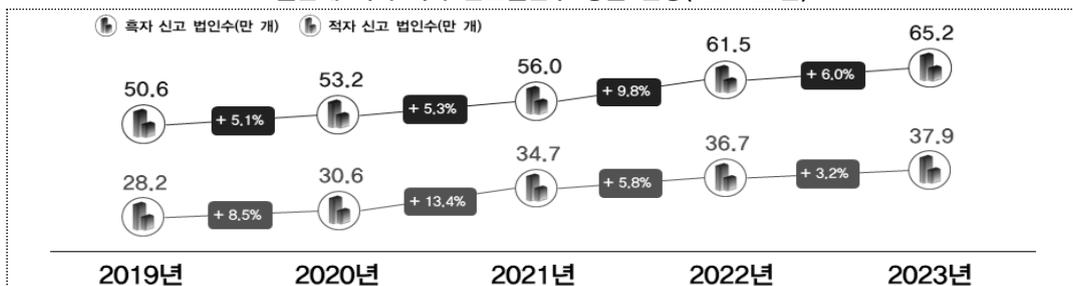
- '23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22년(98.2만 개) 대비 4.9만 개 증가한 103.1만 개로 나타났으며, 처음으로 100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 법인세 총부담세액은 81.6조 원으로 '22년(87.8조 원) 대비 6.2조 원 감소하였습니다.

< 법인세 신고 법인 수 및 총부담세액 현황('19~'23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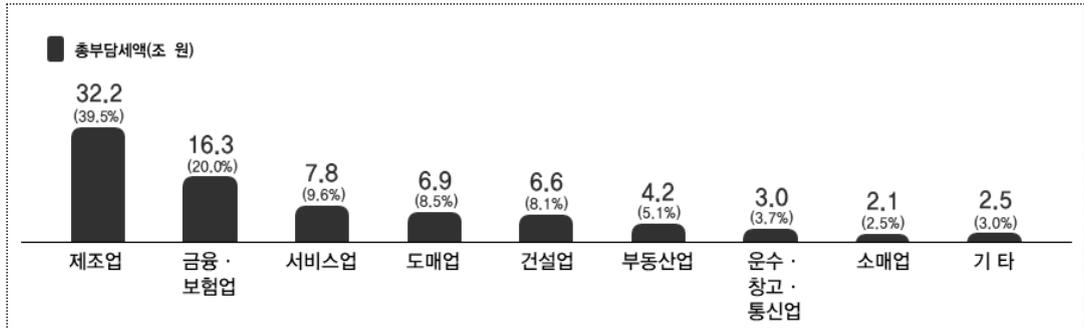
- '23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103.1만 개 중 흑자 신고법인은 65.2만 개(63.2%), 적자 신고법인은 37.9만 개(36.8%)로 나타났습니다.
- '22년과 비교하면 흑자 신고법인은 3.7만 개(6.0%), 적자 신고법인은 1.2만 개(3.2%)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 법인세 흑자·적자 신고법인수 증감 현황('19~'23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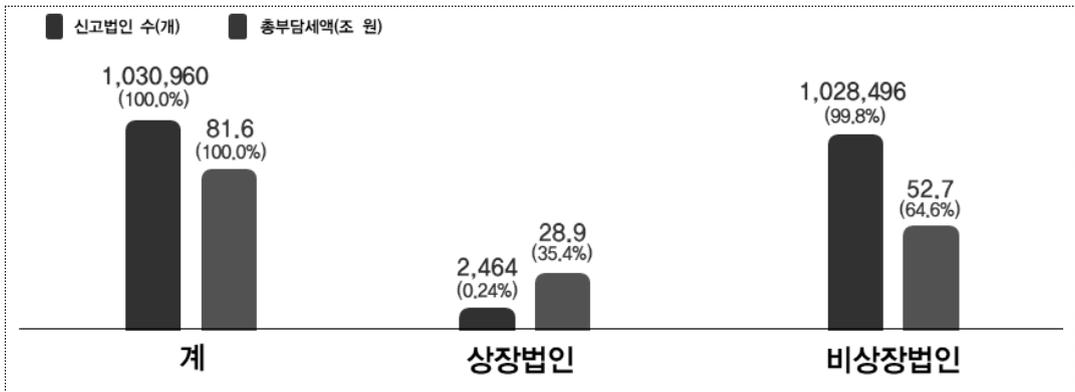
- '23년 법인세 신고 현황을 업태별로 살펴보면, 총부담세액 81.6조 원 중 제조업의 총부담세액이 32.2조 원(39.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 그다음으로는 금융·보험업 16.3조 원(20.0%), 서비스업 7.8조 원(9.6%) 순으로 총부담세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3년 업태별 법인세 신고 현황 >



- 기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2,464개 상장법인(주권상장+코스닥상장)의 총부담세액은 28.9조 원으로 전체의 35.4%를 차지하였습니다.
- 아울러, 102.8만 개의 비상장법인이 52.7조 원(64.6%)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3년 상장·비상장법인의 법인세 신고 현황 >



'23년 법인세 신고 법인 103.1만 개,
처음으로 100만 개 넘었다

참고 1. 법인세 신고 법인수 및 총부담세액 현황

(개, 억 원)

구 분	법인수	수입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총부담세액	
① 2022년	982,456	60,801,545	4,751,080	1,029,416	877,949	
결 산 월	3월말	9,371	929,730	60,909	12,829	12,207
	6월말	12,622	382,101	29,655	5,942	5,445
	9월말	7,970	358,150	18,124	3,834	3,602
	12월말	925,178	58,344,371	4,614,612	1,000,858	850,932
	기타월말	27,315	787,194	27,779	5,954	5,763
② 2023년	1,030,960	73,217,548	4,590,657	973,150	815,982	
결 산 월	3월말	9,510	1,206,221	55,987	11,561	10,867
	6월말	12,665	405,054	28,002	5,556	5,028
	9월말	8,073	386,929	13,417	2,627	2,331
	12월말	973,024	70,348,323	4,462,810	946,973	791,484
	기타월말	27,688	871,021	30,441	6,434	6,272
③ 증감 (②-①)	48,504	12,416,003	△160,423	△56,266	△61,967	
④ 증감률 (③/①)	4.9%	20.4%	△3.4%	△5.5%	△7.1%	

참고 2. 업태별 흑자·적자법인 신고 법인수 현황

(개, %)

구 분	① '22년		② '23년		③ 증 감(②-①)	
	흑자	적자	흑자	적자	흑자 (증감율)	적자 (증감율)
합 계	615,472	366,984	652,200	378,760	36,728 (6.0)	11,776 (3.2)
농·임·어업	9,187	8,540	9,531	8,385	344 (3.7)	△155 (△1.8)
광업	530	411	492	384	△38 (△7.2)	△27 (△6.6)



제조업	128,628	56,264	134,718	55,073	6,090 (4.7)	△1,191 (△2.1)
전기·가스·수도업	6,518	4,372	8,392	3,088	1,874 (28.8)	△1,284 (△29.4)
건설업	89,296	37,490	92,278	39,040	2,982 (3.3)	1,550 (4.1)
도매업	116,716	56,025	122,454	54,387	5,738 (4.9)	△1,638 (△2.9)
소매업	24,015	18,759	26,870	20,393	2,855 (11.9)	1,634 (8.7)
음식·숙박업	6,892	8,233	9,484	7,301	2,592 (37.6)	△932 (△11.3)
운수·창고·통신업	24,367	17,202	27,756	15,340	3,389 (13.9)	△1,862 (△10.8)
금융·보험업	39,455	16,628	40,724	16,941	1,269 (3.2)	313 (1.9)
부동산업	39,947	41,901	70,212	49,072	30,265 (75.8)	7,171 (17.1)
서비스업	122,830	99,401	132,224	107,420	9,394 (7.6)	8,019 (8.1)
보건업	1,222	632	1,153	690	△69 (△5.6)	58 (9.2)
기타 업종	5,869	1,126	5,912	1,246	43 (0.7)	120 (10.7)

* 흑자법인은 법인세 신고서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0 이상인 법인을 의미함

'23년 법인세 신고 법인 103.1만 개,
처음으로 100만 개 넘었다

참고 3. '23년 업태별 법인세 신고 현황

(개, 억 원)

업태별	법인수	수입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총부담세액
합 계	1,030,960	73,217,548	4,590,657	961,249	815,982
제조업	189,791	25,903,233	1,961,319	429,197	321,693
금융·보험업	57,665	15,072,641	721,087	163,926	162,910
서비스업	239,644	5,159,577	500,687	96,795	78,269
도매업	176,841	9,791,636	415,525	76,146	68,930
건설업	131,318	5,836,685	367,160	70,501	65,747
부동산업	89,284	1,359,691	201,635	39,385	41,894
운수·창고·통신업	43,096	3,256,644	159,016	33,170	30,155
소매업	47,263	3,120,525	116,968	21,918	20,525
전기·가스·수도업	11,480	2,392,968	67,577	14,556	11,891
음식·숙박업	16,785	453,655	36,915	7,417	7,105
보건업	1,843	599,130	20,830	4,343	4,010
농·임·어업	17,916	191,536	13,967	2,299	1,917
광업	876	63,614	5,198	1,116	430
기타 업종	7,158	16,012	2,773	482	505

참고 4. '23년 상장·비상장별 법인세 신고 현황

(개, 억 원)

업태별	법인수	수입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총부담세액
합 계	1,030,960	73,217,548	4,590,657	961,249	815,982
주권상장법인 (KOSPI)	844	19,034,941	1,370,332	327,168	254,955
코스닥상장법인 (KOSDAQ)	1,620	1,994,776	198,760	41,700	33,669
비상장법인	1,028,496	52,187,832	3,021,565	592,381	527,358

지난해 기업상속 공제받은 기업 188개로 역대 최대

- 국세청, 2024. 6

- 지난해 가업을 승계하고 상속세를 공제받은 기업은 '22년(147개)에 비해 27.9% 증가한 188개로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 또한, 공제받은 금액은 총 8,378억 원으로 '22년(3,430억 원)에 비해 약 2.4배 증가하였습니다.

< 가업승계 분야 >

세법개정 · 가업승계 지원 효과로 가업승계 대폭 증가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2년부터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우수 중소기업이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그 결과 2년간('22~'23년) 가업상속공제 건수는 평균 168건으로 직전 3년 평균('19~'21년, 101건)에 비해 66.3% 증가하였고,
- 연평균 공제액은 5,904억 원으로 직전 3년에 비해 76.3% 증가하였습니다.
- 특히, '23년 가업상속공제 규모를 '19년과 비교하면 건수는 2.1배, 공제액은 3.5배 증가하였으며, 모두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 가업상속공제 혜택 현황('19~'23년) >

(단위: 건, 억 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건수	88	106	110	147	188
공제금액	2,363	4,210	3,475	3,430	8,378

< 상속세 분야 >

상속세 과세 대상은 '19년 대비 2.4배 증가

-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은 19,944명으로 '19년(8,357명)에 비해 2.4배 증가하였고, 결정세액은 '19년(2.8조 원)에 비해 4.4배 증가한 12.3조 원입니다.
- 상속세 과세 대상은 '03년 1,720명에서 '20년에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선 후 3년 만에 약 2배 증가하여 2만 명에 가까워졌습니다.
- 결정세액 추이를 보면 '03년(4,623억 원)에서 비해 '13년(1조 3,630억 원)에 약 3배 증가하였는데, '13년에서 '23년 사이 9배 증가하였습니다.

< 상속세 결정 현황('19~'23년) >

(단위: 명, 조 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피상속인	8,357	10,181	12,749	15,760	19,944
결정세액	2.8	4.2	4.9	19.3	12.3

상속세 신고는 전년보다 감소, 상속세 납부자 평균 재산은 21.4억 원

- 지난해 18,282명이 총 39.1조 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여 신고인원과 상속재산 가액 모두 '22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지난해 수치를 '19년과 비교하면 신고인원과 상속재산 가액 모두 증가하였으나, 1인당 평균 상속재산 가액은 21.4억 원으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 한편, 상속세를 신고한 인원은 해당 통계 발표('03년) 이후 '22년까지 매년 증가하였으며, 직전 연도보다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 상속세 신고 현황('19~'23년) >

(단위: 명, 조 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신고인원	9,555	11,521	14,951	19,506	18,282
상속재산 가액	21.5	27.4	66.0	56.5	39.1

상속재산 가액 10억 ~ 20억 원 구간이 신고인원 가장 많아

- 지난해 상속재산 가액 규모별 신고인원이 가장 많은 구간은 10억 ~ 20억 원 구간으로 전체



신고인원의 42.9%를 차지하였습니다.

- 상속재산 가액 10억 ~ 20억 원 구간의 신고인원은 7,849명(42.9%), 세액은 0.6조 원 (9.2%)으로 1인당 평균 7,448만 원을 냈습니다.
- 세액이 가장 많은 구간은 상속재산 가액 100억 ~ 500억 원 구간으로 신고인원은 428명 (2.3%), 세액은 2.2조 원(34.1%)이었습니다. (평균 50.8억 원)
- 한편, 상속재산 가액 500억 원 초과 구간에서는 신고인원 29명(0.16%)이 상속세 0.9조 원 (14.1%)을 부담하여, 1인당 평균 310.2억 원을 냈습니다.

상속재산 종류별로는 부동산의 비중이 68.8%로 가장 높아

- 지난해 재산 종류별 상속세 신고 현황을 보면 건물 18.5조 원(47.6%), 토지 8.2조 원 (21.2%)으로 부동산이 상속재산의 68.8%를 차지하였습니다.
- '19년과 비교해 가장 증가율이 높은 자산은 건물로 2.7배 증가하였고, 토지는 23.2% 증가 하여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 지난해 상속재산 가액 중 건물의 비중(47.6%)은 해당 통계 발표('17년) 이후 가장 높았으며, 40%를 초과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 ('17) 27.5 → ('18) 27.8 → ('19) 32.1 → ('20) 38.9 → ('21) 23.9 → ('22) 36.8 → ('23) 47.6%

< 자산 종류별 상속세 신고 현황('19~'23년) >

(단위: 조 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토 지	6.7	6.2	7.8	8.8	8.2
건 물	6.9	10.6	15.7	20.7	18.5
유가증권	2.6	4.7	30.6	17.3	3.6
금융자산	3.5	3.9	5.9	6.3	6.0
기 타	1.7	1.9	5.9	3.2	2.6
합 계	21.4	27.3	65.9	56.4	39.0

연부연납 기간 연장 이후 2년 연속 연부연납 비율 20% 초과

- 지난해 상속세 연부연납 건수는 전체 신고 중 24.2%인 4,425건, 세액은 전체 신고 세액 중 48.9%인 3.1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 '19년과 비교하면 연부연납 건수는 3.1배, 세액은 2.2배 증가하였으며, 전체 신고 중 연부 연납이 차지하는 비율도 9.5%p 증가하였습니다.

- 한편, 세법개정('22년)으로 연부연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이후 연부연납 신청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2년 연속 20%를 초과하였습니다.

< 상속세 연부연납 현황('19~'23년) >

(단위: 건,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 체	9,555	11,521	14,951	19,506	18,282
연부연납	1,406	1,695	2,605	4,756	4,425
비 율	14.7	14.7	17.4	24.4	24.2

< 증여세 분야 >

증여세 신고 건수 및 증여재산 가액은 2년 연속 감소

- 지난해 증여세 신고 건수는 164,230건, 증여재산 가액은 27.3조 원으로 모두 '22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법원 등기정보광장(data.iros.go.kr)에 따르면 '23년 부동산 증여가 전년보다 감소*하였는데 이로 인해 전체 증여세 신고가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 ('21.10월~'22.9월 증여) 327,822건 → ('22.10월~'23.9월 증여) 264,678건(△19.3%)
- 증여세 신고 건수와 재산 가액은 '22년에 이어 2년 연속 전년보다 감소하였으며, '19년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 증여세 신고 현황('19~'23년) >

(단위: 건, 조 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신고 건수	151,399	214,603	264,274	215,640	164,230
증여재산 가액	28.3	43.6	50.5	37.7	27.3

증여재산 종류별로는 부동산 비중이 가장 높으나, '17년 이후 최저(47.4%)

- 지난해 자산 종류별 증여세 신고 현황을 보면 건물이 7.9조 원(29.0%), 토지가 5.0조 원(18.4%)으로 부동산이 증여재산의 47.4%를 차지하였습니다.
- 이는 해당 통계 발표('17년) 이후 최저치이며, 부동산의 비중이 50% 아래로 떨어진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 ('17) 58.2 → ('18) 61.5 → ('19) 59.8 → ('20) 63.6 → ('21) 57.1 → ('22) 50.9 → ('23) 47.4%
- 증여세 신고 현황이 유사한 '19년과 비교하면 토지 증여는 감소하고 금융자산 증여는 늘었으며, 건물과 유가증권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 자산 종류별 증여세 신고 현황('19~'23년) >

(단위: 조 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토 지	8.8	7.9	8.9	7.2	5.0
건 물	8.1	19.9	19.9	12.0	7.9
유가증권	4.6	5.9	7.3	6.3	4.7
금융자산	5.1	7.0	10.3	8.7	6.9
기 타	1.7	3.0	4.0	3.6	2.8
합 계	28.3	43.6	50.5	37.7	27.3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는 '19년 대비 약 40% 증가

- 지난해 미성년자(20세 미만)의 증여세 신고 건수는 13,637건, 증여재산 가액은 2.1조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 증여세 신고 현황이 유사한 '19년과 비교하면 신고 건수는 43.9% (0.9만 → 1.4만 건), 증여재산 가액은 41.6% (1.5조 → 2.1조 원) 증가하였습니다.
-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재산 가액은 5천만 원 이하인 경우가 45.5%로 가장 많았으며, 30억 원 이상의 증여도 63건(0.5%) 있었습니다.
- 한편, 미성년자의 경우 금융자산(32.2%)을, 성인의 경우 건물(32.4%)을 가장 많이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향후 계획 >

-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일반 국민의 궁금증과 답답함을 풀어주기 위해 「상속·증여 세금 상식」을 제작하는 한편,
-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등을 통해 가업승계를 고민 중인 중소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가업승계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예정입니다.

IFRS 18이 '27년부터 순조롭게 도입·적용될 수 있도록 면밀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24. 6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년부터 시행될 IFRS 18의 연착륙을 위해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소통하며 지원해 나갈 실무작업반을 유관기관과 함께 구성·운영하기로 하고, '24.6.13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금융위, 금감원, 기준원, 거래소, 자본연, 한공회, 상장협, 코스닥협 등

<IFRS 18 도입 지원 실무작업반 제1차 회의 개요>

- 일시 / 장소 : '24.6.13.(목) 10:00~11:30 / 상공회의소 3층 BM룸
- 주 제 : ❶ IFRS 18의 주요 내용 (회계기준원)
 ❷ IFRS 18 도입 연착륙 지원방안 (금융위원회)
- 참여기관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거래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공인회계사회, 자본시장연구원 등

※ IASB는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를 개선하는 IFRS 18을 4.9일 확정·발표하였고,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기간 기업, 회계업계, 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지속 청취*

* ('23.11월) IASB 부위원장 초청 토론회(회계학회·기준원), ('24.4월) IASB 위원장-투자자 간담회, IASB 위원장 초청 세미나(거래소·상장협·기준원), ('24.5월) 기업·투자자 간담회(금융위) 등

1. IFRS 18의 주요 내용

이번 IFRS 18은 손익계산서 내에 영업손익 등 범주별 중간합계(Subtotal)를 신설하고 영업손익을 투자나 재무 등의 범주가 아닌 잔여(Residual) 개념의 손익으로 측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IFRS에서는 영업손익 등 손익계산서의 중간합계에 대한 표시나 측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율하지 않아 국내에서는 영업손익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해왔다. IFRS 18이 도입될 경우 우리나라의 영업손익에 대한 재무제표 표시방식이 변화할 전망이다.

* (현행) 영업손익은 매출에서 매출원가 및 판관비를 공제하여 측정 ↔

(변경) 영업손익은 전체 손익 중 투자·재무 등에 속하지 않는 잔여범주

< IFRS 18 주요 내용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❶ (중간합계) 손익계산서 내에 손익의 원천에 따라 영업¹⁾·투자²⁾·재무³⁾·법인세·중단영업 등 범주별 중간합계를 신설·정의하여 성과정보의 비교가능성 제고

- 1) 영업범주: 주된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손익을 포함, 다른 범주에 속하지 않은 손익(잔여범주)
- 2) 투자범주: 개별적·독립적 수익 창출 자산, 종속기업 투자, 현금성자산 등에서 발생하는 손익
- 3) 재무범주: 자금조달부채, 퇴직연금부채에서 발생하는 손익

❷ (경영진 성과측정치*) 회사가 IFRS 18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非회계기준 성과측정치를 추가로 공시하고자 할 경우 주석으로 공시** (외부감사 적용대상에 포함)

* Management-defined Performance Measures(MPM)

** IFRS가 정한 중간합계에서 시작해 경영진이 따로 정한 MPM까지의 조정내역·계산방식 등 공시

❸ (시행일) '27.1.1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의무 적용

【현행 K-IFRS 1001 영업손익】

매출	XXX	} 영업손익
매출원가	(XXX)	
매출충이익	XXX	
판매관리비	(XXX)	
영업손익	XXX	} 영업외손익
지분법손익(*)	XXX	
배당수익(*)	XXX	
차입금 및 리스부채 이자비용	(XXX)	
퇴직연금부채 이자비용	(XXX)	
유·무형자산상차손	(XXX)	
유·무형자산처분손익	XXX	
외화환산손익	XXX	
법인세차감전손익	XXX	
법인세비용	(XXX)	
당기순손익	XXX	

(*) 주식투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영업손익 분류가능

【IFRS 18 영업손익】

매출	XXX	} 영업범주
매출원가	(XXX)	
매출충이익	XXX	
판매관리비	(XXX)	
유·무형자산상차손	(XXX)	} 투자범주
유·무형자산처분손익	XXX	
외화환산손익(영업)	XXX	} 재무범주
영업손익	XXX	
지분법손익	XXX	
배당수익	XXX	
외화환산손익(투자)	XXX	
재무손익및법인세차감전손익	XXX	
차입금 및 리스부채 이자비용	(XXX)	
퇴직연금부채 이자비용	(XXX)	
외화환산손익(재무)		
법인세차감전손익	XXX	
법인세비용	(XXX)	
당기순손익	XXX	

2. IFRS 18 도입 연착륙 지원방안

정부는 IFRS 18의 기본 원칙과 범위 내에서 현 우리 방식을 사실상 그대로 유지·적용할 수 있는 별도표시 등을 통해 IFRS 18의 도입 연착륙을 유도할 방침이다.

첫째, 우리나라의 현재 영업손익 측정방식을 최대한 유지한 중간합계(subtotal)를 IFRS 18에 따른 영업손익 산출 과정에서 별도로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보이용자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동 중간합계의 합리적인 명칭을 기업·회계업계·학계 등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 실무상 혼란이나 애로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에 대한 안내나 홍보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상장사 등에 대해서는 산업별 회계처리 가이드라인(기준원)을, 회계법인 등 감사인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가이드라인(한공회)을 마련하여 제공하며, 빈번한 질문을 중심으로 Q&A도 최대한 자세하게 제시할 예정이다. IFRS 18과 관련한 세미나·포럼 및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위한 실무 간담회 등도 꾸준히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회사·감사인 등의 질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질의회신 전담팀도 구성하여 운영하고, IFRS 18 전용 웹사이트와 핫라인도 개설할 예정이다(기준원).

셋째, IFRS 18의 손익계산서 개편에 따른 영향분석을 추진한다. IFRS 18 적용 시물레이션 등을 통하여 회사별·산업별(건설, 조선 등 수주산업, 금융업 등) 영향을 분석할 계획이다(상장협, 코스닥협, 금감원 등).

* 예) 자회사 등에 대한 투자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지주회사의 지분법손익은 현재 영업손익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IFRS 18에 따르면 이는 투자손익으로 분류
마지막으로, 영업손익 등을 규제지표로 사용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규제 지표의 변경 또는 유지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 예) 5년 연속 영업손실시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코스닥상장규정)
3년 연속 영업손실시 감사인 직권지정(외부감사법) 등

3. 향후 계획

실무작업반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우리 상황에 맞는 수정도입 방안을 반영한 K-IFRS 제1118호를 마련하고, '25년 중 개정*하여 '27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 회계기준위원회(회계기준원 內 의결기구) 심의 →
회계제도심의위원회(증권위 자문기구) 심의 →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아울러, 제도시행 초기 기업들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적용과정에서 회계처리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고의가 아닌 이상 비조치하는 등 일정기간 제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붙임 - IFRS18 주요 내용

(1) 주요 재무제표*와 주식

□ 주요 재무제표와 주식의 역할 명확화 ⇒ 정보의 위치 결정기준 제시

① (주요 재무제표) 자산·부채·자본, 수익·비용 및 현금흐름에 대한 구조화된 요약 → 기업 간·기간 간 비교 가능

② (주식) 주요 재무제표를 이해*·보완**하는 중요한 재무 정보

* 정보 세분화 및 항목의 특성 설명, 인식 및 측정 방법, 가정 및 판단 정보

** 예) 미인식 우발자산·부채 정보, 기업의 시장·신용위험 노출 정보

※ ‘기타’ 항목 내에 중요한 항목을 숨기지 못하도록 제한

* ‘기타’ 항목 합계금액이 큰 경우에도 가장 큰 하위 항목에 대한 설명 요구

(2) 손익계산서

① (원칙) ①영업, ②투자, ③재무, ④법인세, ⑤중단영업 범주로 구분

① (영업범주) 다른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손익 (잔여 범주)

② (투자범주) ㉠개별적&독립적 수익 창출 자산, ㉡종속·관계·공동기업 투자, ㉢현금 및 현금성자산 관련 발생 손익

- (개별적&독립적 수익 창출 자산) 금융자산, 기타 투자자산 등

③ (재무범주) ㉠자금조달 목적에서 발생하는 부채의 변동 손익,

㉡자금조달 거래 이외의 부채* 관련 이자수익·비용 등

* 매입채무 및 미지급금, 리스부채, 퇴직급여부채, 복구충당부채

② (총합계와 중간합계) 영업손익, 재무범주 및 법인세 차감전 손익 (영업손익+투자범주 손익), 당기순손익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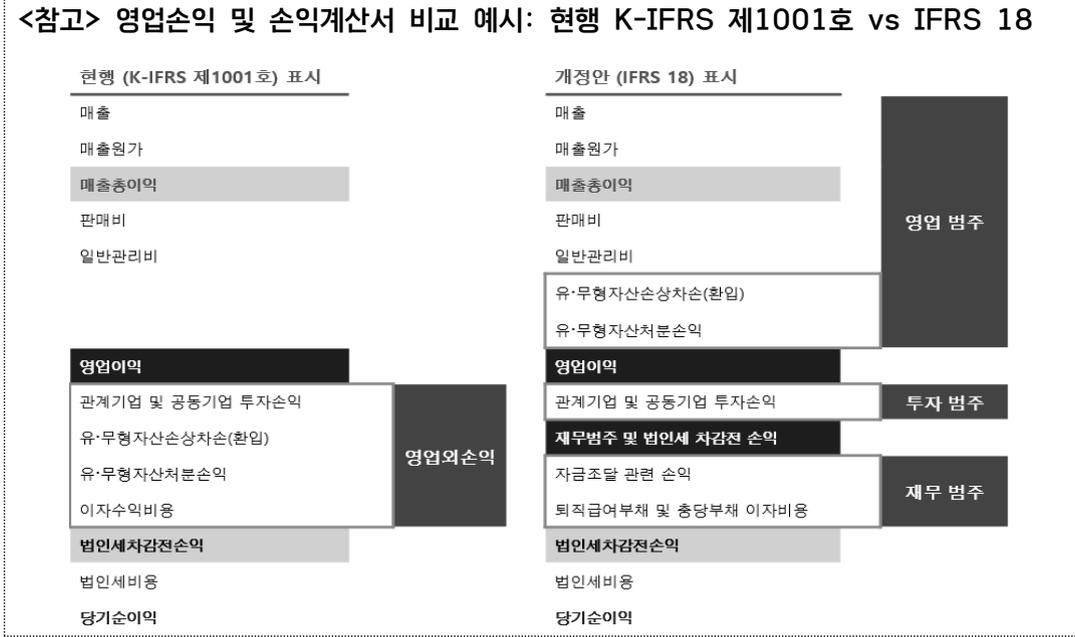
③ (영업범주 비용의 표시·공시) 비용의 성격과 기능의 특성 고려 ⇒ 가장 유용한 구조적 요약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분류·표시

○ 혼합표시 가능(기능별+성격별)*

* 예) 일부 감가상각비를 매출원가(기능별)에 포함한 경우, 나머지 감가상각비(성격별)에 “매출원가에 포함되지 않은 감가상각비”라고 표기

○ 기능별 항목(매출원가) 제시할 경우 ⇒ 포함된 비용의 성격 공시

IFRS 18이 '27년부터 순조롭게
 도입·적용될 수 있도록
 면밀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Management-defined performance measures)

- ① (정의) 'IFRS 회계기준에서 특정한(specified) 중간합계' 를 제외한 아래에 해당하는 손익의 중간 합계
 - ❶ 재무제표 외 공개 커뮤니케이션에 사용
 - ❷ 기업의 재무성과에 대한 경영진의 관점을 전달하는데 사용
- ② (공시) 계산 방식, 조정 내역(MPM과 IFRS 18에서 특정한 중간합계 간), 법인세효과 및 비지배지분에 대한 효과 등

7월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이후에도 원활한 거래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기획재정부, 2024. 6

7.1일(월)부터 국내 원/달러 외환시장의 거래시간(현재 09:00~15:30)이 다음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년 초부터 실시한 '외환시장 구조개선'의 시범운영도 마무리되면서 정식 시행 단계로 나아간다. 연장되는 우리 외환시장 거래시간은 글로벌 금융중심지인 영국 런던 금융시장 거래시간을 모두 포괄하는 시간대로,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과 투자자들이 주로 거래하는 시간대에 원화도 보다 편리하게, 실시간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원/달러 시장 개장시간이 연장되면, 한국 주식·채권 등을 거래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자들은 한국시간 오후 3시 30분 이후에도 새벽 2시까지 계속 국내 금융회사 또는 주로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RFI*)을 통해 미 달러화를 원화로 환전할 수 있게 된다. 국내 투자자들이 야간에 미국 주식·채권을 매수하는 등 해외 자본시장에 투자할 때도 임시환율(假환율)이 아닌 실시간 시장환율로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다. 국내에서 영업하거나 해외에 진출한 수출입 기업 또한, 야간시간대 발표되는 주요국 경제지표(예: 미국 GDP 성장률) 등 외환·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즉각 반영된 실시간 환율로 적시에 환전하거나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발생 위험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 국내 외환시장에서 직접 거래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춰 외환당국에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6.12일 기준 26개 기관)

** (예) 지금까지는 외환시장 종료 이후 미국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환전시, 시장환율보다 높은 假환율로 1차 환전되고, 다음날 외환시장 개장 이후 실제 시장환율로 정산
→ 7월부터, 새벽 2시까지는 실시간 시장환율로 환전 가능(별도 정산절차 불필요)

오는 7.1일 개장시간 연장에 발맞춰, 외국환은행·증권사·외국환중개회사 등 국내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연장시간대(15:30~+102:00) 외환거래 및 이에 따른 결제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야간에도 근무(야간데스크)할 계획이다. 또한, 여러 금융회사들은 런던 등 해외에 지점 또는 사무소를 새로이 설립하거나 외환거래 전담 인력을 파견할 예정이다.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통한 제도변화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연장시간대에도 시장참가자들이 필요한 물량을 적절한 가격에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유동성 유지 등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 다만, 스위스 프랑화, 중국 위안화 등 24시간 거래가 가능한 통화들도 업무종료(COB, Close of business) 이후 심야시간대에는 거래량이 감소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국내외 시장참가자들이 우리 외환시장에서 거래할 때 큰 어려움이 없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간 외환당국은 국내외 금융기관 및 외국인투자자 등과 활발히 소통하며 우리 외환시장의 규제·관행 정비사항을 발굴하고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구체적으로, 제3자 외환거래* 활성화를 위한 일시적 원화차입(Overdraft) 확대, RFI의 보고 부담 완화 및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유예('24년말까지), 해외지점이 RFI로 등록된 국내은행을 한국은행 외자운용원의 이종통화 외환매매 거래기관으로 선정 등을 추진 중이며, 이와 함께 다음과 같은 방안을 통해 연장시간대의 외환거래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 고객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제3자 은행(RFI)에서도 고객의 증권투자 등을 위한 외환거래 가능 → 외환서비스 제공에 대한 기관 간 경쟁을 통해 환전 비용 절감

첫째,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 제도를 개편하여 국내은행들이 연장시간대에도 활발하게 매도·매수 가격(호가)을 제시하는 등 시장조성 역할을 할 유인을 강화할 것이다. 내년도 선도은행 선정시 연장시간대 거래실적에 높은 가중치를 적용(시간대별로 가중치 차등화)하는 방향으로 변경하고, 외환건전성부담금 공제 항목 중에서 선도은행의 원/달러 시장조성 거래의 비중도 높일 계획이다. (☞ 참고)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외국환거래규정」 및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절차」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은행들이 장후반인 심야시간대도 현물환 등에 대해 적극 시장조성을 할 수 있도록 야간데스크를 운영하는 은행들의 역외 원/달러 차액결제선물환(NDF*) 전자거래 허용 시간을 7.1일부터 1시간 연장(현재 새벽 2시 → 3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은행들이 야간시간대에 환율변동 위험을 더욱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외환시장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거래하고 경쟁력 있는 호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Non-Deliverable Forward: 계약환율과 만기 시점의 현물환율(지정환율)간 차액만큼만 원화가 아닌 달러화로 결제하는 선물환으로, 外인들이 환헤지 및 환투자 수단으로 활용

** 국내은행들이 우리 외환시장 개장시간 중 고객 또는 다른 은행과 거래하며 발생한 매도·매수 초과분에 대한 환율변동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NDF를 활용하는 점을 고려

둘째, 연장시간대에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활발하게 영업·거래하고 있는 RFI의 원화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우선, 적극적으로 거래하는 RFI를 「선도 RFI」로 선정하여 외환당국과의 정례적인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자 한다. 또한, 개장시간 연장 이후 기관별 거래 규모와 빈도 등을 보아가며 RFI의 등록 적정성 재검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RFI와 국내 금융기관간 계약체결 및 거래준비 상황도 지속 모니터링하고, 어려움이 있을 경우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해외에 소재한 RFI가 안정적인 거래 인프라를 통해 신속하고 원활하게 거래하고, 국내시장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국자금중개(주)의 런던 지점 및 싱가포르 사무소 설립을 인가하였으며, 서울외국환중개(주)의 런던 사무소 개설도 인가할 예정이다.

위와 같이, 외환당국은 연장시간대에 적정 유동성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외환시장 구조개선'에 따른 우리 외환시장 참가자 및 거래시간 확대가 지나친 변동성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다. 야간 시간대에도 환율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적기에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하는 등 적절히 대응할 것이다. 또한, 국내 금융기관의 야간데스크 운영 현황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영업을 촉진하여 금융 선진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RFI를 포함한 시장참가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수렴과 추가적인 제도보완 노력도 계속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하반기 이후 시장 상황과 대내외 여건, RFI의 참여 등을 보아가면서 24시간 개장을 포함한 우리 외환시장의 추가 개방 필요성과 적절한 시점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참 고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 제도 개요 및 개편방향**

1. 제도 개요

□ (개요) 원/달러 거래 활성화에 기여한 은행을 1년 단위로 선정*하여 외환건전성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22년 도입)

* '24년 선도은행(7곳): 국민, 산업, 신한, 우리, 하나, CA-CIB, JP Morgan

** 금융회사등에 단기(잔존만기 1년 이하) 비예금성외화부채에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외채구조 장기화 등을 목적으로 '11.8월 은행에 최초 도입, '15.7월 부과대상 확대

□ (기본요건) ①재무건전성 및 신용도가 양호하고 ②법령을 준수하며, ③외환시장·외화자금시장에서 최소 거래비중을 충족하는 기관

* ①재무건전성(BIS 총자본비율 8% 이상), 신용도(A- 이상), ②최근 3년간 외국환업무 관련 당국의 중징계이상 제재 無, ③원/달러 현물환·스왑시장 거래량 비중이 각각 2% 이상

2. '25년 선도은행 선정기준 및 특례 개편방향

① (선정기준) 평가항목을 세분화하여 연장시간대의 현물환·스왑거래 실적을 반영하고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시간대별 가중치도 차등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금융감독원, 2024. 6

다음달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세부사항을 규율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6.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3.7.18일 제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는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는 의무를 부과하였다. 또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등 제재근거도 마련하였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에서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 법률이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다.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위원회(시행령 제2조부터 제7조)]

법률에서는 현행 「특정금융정보법」과 동일하게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다른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거나 이용자 피해 우려가 없는 전자적 증표*는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시행령에서는 이에 더하여 현행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에서 제외되는 대상인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채권, 모바일 상품권과 함께 신개념 디지털 자산의 성격을 보유하고 이용자 피해 발생 우려가 낮은 예금토큰**과 NFT(Non-Fungible Token)**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에 추가하였다.

* 「게임산업법」상 게임머니 및 게임아이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 「전자증권법」상 전자등록주식, 한국은행이 발행한 전자적 형태의 화폐(CBDC)

** 「은행법」상 은행이 한국은행 CBDC 네트워크(CBDC를 발행·관리하는 네트워크)에서 취급하는 예금 및 그에 준하는 전자적 증표

***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확인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등 단일하게 존재하여 다른 전자적 증표로 대체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한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가상자산위원회를 설치한다. 가상자산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며,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이용자의 예치금 관리(시행령 제8조부터 제10조)]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신탁하여 관리해야 한다. 시행령은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의 범위를 은행으로 정하였다. 가상자산사업자와 관리기관은 i) 예치금을 관리기관의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고, ii) 관리기관이 예치금을 국채·지방채 등 안전자산에 운용하여 그 수익을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가상자산사업자는 이 수익에서 일부 비용을 제외하고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로 지급*)하는 내용의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예치금 이용료의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 마련의무 등은 「가상자산업감독규정」에서 정함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사업자 신고가 말소된 경우 등에는 관리기관인 은행이 예치금의 지급시기·장소 등을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용자와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예치금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후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가상자산사업자 파산 등의 경우에도 예치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용자 가상자산 보호(시행령 제11조)]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70%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80%*) 이상의 이용자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해킹, 배임, 영업의 폐지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해당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별도의 비율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 구체적인 보관비율(80% 이상) 및 비율산정 기준은 「가상자산업감독규정」에서 정함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시행령 제15조·제16조 및 제18조, 별표1)]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도록 하면서, 감시의 대상이 되는 이상거래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였다. 시행령은 상시감시의 대상이 되는 이상거래를 i)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 ii) 가상자산의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보도 등이 있는 경우 등으로 정의하였다. 이상거래의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감독원·가상자산거래소가 자율규제 형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상거래 감시 결과,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가상자산거래소는 금융당국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와 관련하여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시행령에 규정하였다. 매체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데 먼저,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 특수일간신문에 게재된 경우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지상파 방송·연합뉴스사를 통해 제공된 정보는 제공 후 6시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된 정보로 인정된다. 이는 「자본시장법」과 동일한 기준이다. 다음으로 가상자산거래소에 공개된 정보는 공개 후 6시간, 발행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은 공개 후 1일을 경과한 때부터 공개된 정보로 인정된다. 다만, 발행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은 불특정



다수인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최근 6개월간 중요정보를 계속적으로 게재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징역·벌금 및 과징금의 수준은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한 부당이득에 연동*되는데(최대 무기징역) 시행령에서 이러한 부당이득의 산정방식을 실현이익·미실현이익 및 회피손실액으로 구분하여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미공개중요정보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 (형사처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상당 벌금
(부당이득 5억~50억 : 3년 이상의 징역, 부당이득 50억~ :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과징금) 부당이득 2배에 상당하는 금액. 부당이득 산정 곤란시 40억원 이하 과징금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시행령 제17조)]

가상자산사업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다. 시행령에서는 먼저 이용자의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정보통신망 등에 전산장애가 발생하거나 이를 보수·점검하는 경우, 해킹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를 규정하였다. 그 외에도 「국세징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요청·명령하는 경우, 예치금 및 가상자산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행위로 발생한 범죄수익 등 불법재산과 관련이 있는 경우* 등에도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출금 차단이 가능하게 된다.

* 약관에 해당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2개월(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가능

[향후일정 및 기대효과]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은 7월초 공포될 예정이다. 법률 및 시행령에서 규정(금융위원회 고시)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가상자산업감독규정」 및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정안도 7.10일 금융위원회 의결 후 고시될 예정이다. 시행령과 규정은 7.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함께 시행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의무가 부여되고, 시세조종 등 이용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가 금지되어 가상자산시장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차질없이 시행되어 이용자 보호가 강화되고 건전한 시장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나갈 계획이다.